

보 고 번 호	회 의 차 수	회 의 일 자	보 고 자
제 119 호	제 15 차	1989. 7.20.	총 재 김 건

보 고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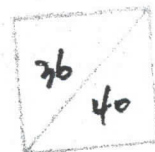
보고사항 무역어음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개정하여
무역어음 인수업무의 취급기준을 신설하였기에 이를 보고함

보고관계 법규조항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여신운용 및 투자지침)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 투자, 지급보증 및 인수업무의
취급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



113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4조(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내용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 제6조 (생략) (신 설)	제1조 - 제6조 (현행 과 같 음) 제6조의 2 (무역어음의 인수) ①금융기관은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무역금융 유통대상인 되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을 인수할 수 있다. 1.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80일이내로서 신용장상의 선적기일 또는 물품인도 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내에 도래하는 어음 2. 액면금액이 신용장금액(FOB기준)에 인수 당일의 대고객전환매입율을 곱한 금액이내로서 500만원 이상인 어음 ②금융기관은 허위 또는 변조된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무역어음 인수취급기준 신설
제7조 - 제9조 (생략) (신 설)	제7조 - 제9조 (현행 과 같 음) 부 칙 이 세칙은 1989. 8.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